

행정쟁송법 요론

제4판 추록

(2025년 09월 12일 기준)

※ 본 추록은 2024년 09월 23일 발행된 “행정쟁송법 요론” 제4판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쟁송법 요론 제4판 - 추록

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2025년 09월 12일 기준)

2024년 09월 23일 발행된 행정쟁송법 요론 제4판에서 개정판(제5판, 2025년 09월 10일 발행)의 추가된(보완) 내용과 구판(제4판) 내용상의 오타자 등을 정리한 추록(정오포함)을 게재합니다. 문제 교체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위치	교체 및 추가사항
p.8 하단 - 추가	<p>IV. 무명항고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치분의 인정여부</p> <p>1. 문제점</p> <p>민사집행법상의 가치분제도를 무명항고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우리 행소법은 §8②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무명항고소송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치분 준용여부가 문제된다.</p> <p>2. 학 설</p> <p>이에 대하여 학설은 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민사집행법상 가치분제도에 대한 특별 규정이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등을 인정하지 않는바, 인정되지 않는 무명항고소송을 전제로 한 가치분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 ② 행정소송법상 가치분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행소법 §8②에 의해 민사집행법상 가치분이 준용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는 견해 ③ 행정소송법의 명문규정상 원칙상 불허되나, 거부처분과 같이 집행정지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가치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p> <p>3. 판 례</p> <p>판례는 “<u>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92마54).</u>”라고 판시하여 부정설과 결을 같이 한다.</p> <p>4. 검 토</p> <p>생각건대, 행정심판법은 §31에서 가치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반하여 행소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는바, 행정소송법이 집행정지에 관하여 특칙(행소법 §23, §24)을 두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처분등에 대하여 가치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정책적으로는 행정소송에 가치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현상유지를 위한 가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치분을 규정하고 있다.</p>

<p>p.13 하단 - 추가</p>	<p>TIP 구체적 규범통제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그 법률의 법률적합성을 심사하고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건에서 해당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규범통제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개별 사건에서 원고가 처분의 근거되는 법령의 위헌 또는 위법성을 주장하면 재판 과정에서 위헌 또는 위법심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법원의 위헌·위법 판단이 이루어진 후 대법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우리 행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p> <p>행소법 제6조(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p.22 (3) 하단 - 추가</p>	<p>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긍정 (2022두33439)</p> <p>[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p> <p>[2]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갑이 사단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비록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 않고, 사단장이 갑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갑으로서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p>
<p>p.42 판례 하단 - 추가</p>	<p>판례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2020두4803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는 하자가 없는데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p.47 판례 상단 - 추가</p>	<p>판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의 법적성질(=행정규칙)(2021두60960)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p>

<p>p.49 판례 상단 - 추가</p>	<p> 판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명령 이익 긍정(2024두40493)</p> <p>[1]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p> <p>[2] 갑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근로자 을에게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을이 이미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1년간 휴직에 들어간 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을은 위 대기발령으로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을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개시되면서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을이 구제신청 당시 갑 조합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을로서는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p>
<p>p.52 판례 하단 - 추가</p>	<p>참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p> <p>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10조 (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仲裁)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p>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仲裁裁定)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p>p.54 1. 하단 - 추가</p>	<p> 판례 처분권한이 위임된 경우 처분청은 수입청(2021두44548)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갑 주식회사가 시내 버스 노선을 운행하면서 환승요금할인 및 청소년요금할인을 시행한 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며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갑 회사와 광명시장에게 ‘갑 회사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기존에 회신한 바와 같고, 광명시에서는 적의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안에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사무는 광명시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위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의 해야 하고, 경기도지사는 갑 회사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아니며, 위 통보는 경기도지사가 갑 회사의 보조금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통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광명시장의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자로서 갑 회사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과 아울러 광명시장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갑 회사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심사하여 갑 회사에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기도지사의 위 통보는 갑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p>

<p>p.66 1. 하단 - 추가</p>	<p>우리 헌법은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통제 방식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¹⁾을 규범심사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헌법 §107②). 한편, 구체적 규범통제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그 법령의 법률적합성을 심사하고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건에서 해당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규범통제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개별 사건에서 원고가 처분의 근거되는 법령의 위헌 또는 위법성을 주장하면 재판 과정에서 위헌 또는 위법심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법원의 위헌·위법 판단이 이루어진 후 대법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우리 행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행소법 제6조(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div> <p>1) 구체적 규범통제는 반드시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됩니다. 즉, 해당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심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추상적 규범통제(소송사건 없이 법령 자체의 위헌 여부를 판단)와의 큰 차이점입니다.</p>
<p>p.66 2. 하단 - 추가</p>	<p>판례 추상적인 시행규칙의 처분성 부정(2019두48905)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갑 법인이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갑 법인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하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자, 갑 법인이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한 조세법령으로, 위 시행규칙에서 덤핑물품과 관세율 등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위 시행규칙은 수입된 덤핑물품에 관한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위 시행규칙에 근거한 관세 부과처분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게 될 자는 덤핑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등이지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아니고, 위 시행규칙은 덤핑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행위를 규제하거나 외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의 덤핑물품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규칙이 효력 범위 밖에 있는 갑 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p>
<p>p.69 판례 하단 - 추가</p>	<p>판례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통지의 처분성 긍정(2024두35989) 교육부가 국공립 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갑 국립대학교 총장에서 소속교원 을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 및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총장이 교내 이메일을 통해 을에게 '환수금 납입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여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관한 환수금을 납부해 달라는 요청을 통지한 사안에서 이 사건 환수 통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p> <p>1)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구성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서와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서 통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교직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계획서와 실적을 비롯한 지급 요건에 대한 심사와 판단을 거친 후 국립대학의 장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다.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환수 역시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았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하였는지, 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지 등의 환수 요건에 관한 판단이나 정성적 평가를 거</p>

처 이루어지고, 그 환수 여부나 범위 등이 법령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국립대학의 장의 지급 결정이나 환수 통지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교직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2) 교육공무원인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등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를 따라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환수 통지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지급 기준에 의하여 환수금을 완납할 때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 즉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로 원고는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입는다.

3) 피고(갑 국립대학교 총장)의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는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 제2항,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 피고가 제정한 ○○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4) 국립대학의 장의 환수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교직원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적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다른 구제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판례 I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입주계약해지의 처분성 긍정(2010두23859)

1. 사실관계

피고(한국산업단지공단)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으로서 반월공업공단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반월공업공단은 1980. 12. 31. 원고와 반월공업단지 내 공업용지 B-12-42 5,820.3m² 에 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사용계획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고, 피고의 동의 없이 그 사용계획과 상위한 용지의 사용이나 수익행위를 할 수 없고, 용지 및 건물을 생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그 위반시에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8. 12. 17.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데, 그 사유는 원고가 공장에서 할 수 없는 서비스업(세탁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2. 대법원 판단

이 사건 입주계약의 근거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지식경제부장관을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규정하고(제30조 제1항 제1호), 피고를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으로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38조 제1항), 그 입주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관리기관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 등을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제4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5항), 이에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52조 제10호),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 또는 양도하여야 하고 (제43조), 이에 위반한 때에는 관리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43조의3), 과태료에 처한다(제55조 제1항 제4호)고 규정하는 한편,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당해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승제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의 지위,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그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지통보는 단순히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70
4. 하단
- 추가

p.77
첫 번째
판례 하단
- 추가

판례 II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고지방송명령의 처분성 부정(2016두3425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세월호 사건 관련 인터뷰 내용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함으로써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인 방송사업자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정한다는 의결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재조치처분을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인 원고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하는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과 구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고지방송'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p.91
5. 하단
- 추가

(1) 의의 및 종류

부관이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부가된 종된 규율을 의미한다.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등이 있다.

- ① **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으로, 정지조건 (예) 진입도로 완공을 조건으로 하는 주유소 영업허가)과 해제조건(3개월 공사착수를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이 있다.
- ② **기한** :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즉, 특정한 시점이나 기간)에 의존시키는 부관으로, 시기(예) 2025년 6월 1일부터 영업허가)와 종기(예) 2025년 9월 1일까지 영업허가)가 있다.
- ③ **철회권의 유보**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정청이 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미리 유보하는 부관(예) 민원이 심각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부담** : 허가·특허 등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특정 의무(작위·부작위·수인·급부 등)를 부과하는 부관(예) 건축허가하면서 주차장 또는 녹지 조성 등 특정 시설 설치 의무 부과)

p.100
2) 하단
- 추가

판례 | 실질적 심사를 통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2017다51610)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p.103
3) 하단
- 추가

판례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경우 직권심리의원칙(행정법 §39)의 한계를 위반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긍정(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65528)

1)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고(대법

p.103
3) 하단
- 추가

	<p>원 1996. 2. 13. 선고 95누8027 판결 참조),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p> <p>2)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이 이 사건 원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원처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리 결과 이 사건 재결의 고유한 위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기각되는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을 한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소송에서는 이 사건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원처분의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재결 및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이 사건 재결 자체의 위법 여부를 다투 다른 수단이 없다. 이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재결의 효력을 다투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p>
<p>p.112 III. 하단 - 추가</p>	<p>판례 본안 패소 확정된 이후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의 이익 부정(2024두6101820) 재결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해당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자신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거부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아,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가 조세심판원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p>
<p>p.122 5. 상단 - 추가</p>	<p>판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통지받은 날)(2022두52980)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p>

p.164
두 번째
판례 하단
- 추가

판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추가 변경된 거부처분의 사유를 심리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임(2023두61349 판결).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처분상대방에게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의 실제적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의 실제적 당부에 관한 처분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p.173
판례 하단
- 추가

판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무관하게 처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있다면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2023두61349)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루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법령의 변경으로, 예를 들어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한 후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처분절차를 거쳐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제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그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처분상대방으로서 처분청이 별개의 사실을 바탕으로 새롭게 주장하는 처분사유까지 동일 소송절차 내에서 판단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을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처분상대방의 그러한 절차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기본취지와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처분상대방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허용할 경우,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가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에 따라 처분청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의 실제적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 결과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도 실제적으로 위법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경우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까지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처분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면, 법원으로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으로 돌아가 처분청의 거부처분사유 추가·변경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처분상대방에게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의 실제적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의 실제적 당부에 관한 처분상대방

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p.191
(2) 하단
- 추가

▶ 판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는 무관하게, 처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변경된 거부처분 사유도 실제적으로 위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된다면 법원이 추가·변경된 거부처분 사유에 관하여 내린 판단에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친다.(2023두61349). 처분청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제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그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처분상대방으로서 처분청이 별개의 사실을 바탕으로 새롭게 주장하는 처분사유까지 동일 소송절차 내에서 판단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을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처분상대방의 그러한 절차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기본취지와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처분상대방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할 경우,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가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에 따라 처분청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의 실제적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 결과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도 실제적으로 위법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경우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까지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처분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면, 법원으로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으로 돌아가 처분청의 거부처분사유 추가·변경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처분상대방에게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의 실제적 당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의 실제적 당부에 관한 처분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p.195
4. 하단
- 추가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처럼 명시적인 조정·화해 법률 근거가 없으나, 실무상 '사실상의 조정' 형태로 조정권고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재판부가 조정권고를 하고 피고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며,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조정은 판결 대신 소송 당사자가 한번에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조정 내용이 공익이나 제3자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 절차가 계속된다.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법은 명시적으로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의 2 (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 | 공법상 계약에 대한 당사자소송(2021다250025)

[1]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만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3] 갑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지급되었는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갑 회사가 외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위 협약에 위반하여 집행하였다며 갑 회사에 정산금 납부 통보를 하자, 갑 회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산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 등의 공적 목적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추진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을 갑 회사 등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된 점, 위 협약 체결 및 이행의 효과는 공공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산업기술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은 위 협약의 체결 과정부터 이행 및 종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는 위 협약에서 정한 권리 외에도 위 법령에 의하여 계약 상대방인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인정되는바, 이렇게 관계 법령에 의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권한 행사 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위 협약은 사법상 계약과 다른 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공적인 목적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그 동의나 승낙 없이 위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는 점, 위 협약에 일반 사법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이행보증금, 하자보증금, 지체상금 규정 등이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계약상 정산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갑 회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따라서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이 없는 경우 이송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p.226
첫번째
판례 하단
- 추가

p.232
첫번째
판례 하단
- 추가

한편, 당사자소송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준용(행소법 §44, §22)하는바,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당사자소송 도중, 해당 처분(면직 등)에 대해 처분청이 일부 취소나 변경을 하는 경우, 원고는 당초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소를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의 면직처분을 대상으로 보수 청구 당사자소송을 진행하다가, 행정청이 면직처분을 일부 취소 또는 변경하면, 원고가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소변경을 신청해 당사자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p>p.255 II. 하단 - 추가</p>	<p>판례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처분에서 집행정지결정의 시적범위(2021두40720)</p> <p>[1]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선고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 이는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대로 적용된다.</p> <p>[2]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후속 변경처분서에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특정하는 대신 처음 행정처분의 집행을 특정 소송사건의 판결 시까지 유예한다고 기재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선고되면 다시 진행한다. 따라서 당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후속 변경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한 이종처분에 해당한다.</p>
<p>p.259 III. 하단 - 추가</p>	<p>판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경우 직권심리의원칙(행정법 § 39)의 한계를 위반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긍정(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65528)</p> <p>원고는 이 사건 재결이 이 사건 원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원처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리 결과 이 사건 재결의 고유한 위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기각되는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을 한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소송에서는 이 사건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원처분의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재결 및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이 사건 재결 자체의 위법 여부를 다툴 다른 수단이 없다. 이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p>
<p>p.263 1. 하단 - 추가</p>	<p>TIP 우리 판례는 행정심판의 경우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대한 논증에서 행정소송에서의 기속력의 성질에 대한 논리인 기판력과의 구분설 등에 대한 설시는 유해적 기재내용이 됩니다.</p>